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계약서

이용자 (갑)	성 명		등 급	
	생년월일		연락처	
적용대상		□일반 □경감대상자(□40% □60%)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가정재가노인복지센터	종 류	방문요양
	대표자	정 성 옥	연락처	053) 211-8443
주 소		대구시 동구 경안로 737 2층		
변경내용	2022. 1. 1 일자로 재가급여 수가 및 등급별 한도액 인상으로 본인부담금 변경			

2022년 재가급여(방문요양) 월한도액 및 시간별 이용료(원)

■ 등급별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본인부담금	250,905	223,020	202,620	186,735	160,275
전년도대비인상액	22,800	20,265	8,310	8,265	7,080

■ 방문요양 이용료 (방문 시간별)

시 간	금 액	본인부담금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9%)	본인부담금 경감(6%)	시 간	금 액	본인부담금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9%)	본인부담금 경감(6%)
30분이상	15,430	2,315	1,389	926	150분이상	44,770	6,716	4,029	2,686
60분이상	22,380	3,357	2,014	1,343	180분이상	50,400	7,560	4,536	3,024
90분이상	30,170	4,526	2,715	1,810	210분이상	56,170	8,426	5,055	3,370
120분이상	38,390	5,759	3,455	2,303	240분이상	61,950	9,293	5,576	3,717

상기와 같이 급여비용 내용을 2022년 1월 1일 부터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2021년 월 일

수급자(보호자) : (인)

기관장(대표자) : 정 성 옥 (인)